

생태복원재료 관련 국내 실정법의 속성 분석*

신 익 순¹⁾

¹⁾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An Analysis on the Properties of th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s*

Shin, Ick-Soon¹⁾

¹⁾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egal object in the related legislation tak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omestic laws and the leading cases connected with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s and analyzing their properties according to the analytic standards which are legal class and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 items, the present condition by the field of ecological restoration business,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leading cases, comparison of the domestic laws with the foreign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36.5% of totals), enforcement regulation(32.4%) and law(31.1%) as legal clas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relating to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s are in the order of frequency that shows the little strong frequency at low-ranking class. By items, the number of legislation relating to planting material holds about majority, next to it, stone material, soil material and wood material are in the order of frequency.

2) By the field of ecological restoration business, legislation relating to administration forms the highest frequency(36.3% of totals), next to it, material properties(23.4%), plan · design(13.0%) are in the order of frequency.

3) For the number of the leading cases by items of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s, those are, for the most part, them relating to planting material(93.8% of totals). The number of legislation relating to planting material forms the highest frequency at laws and the leading cases in common.

4) The domestic legislation connected with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s is mainly to be in legal class of the positive law, on the contrary, a foreign country has legislation widely consisted of laws,

* 이 논문은 2002년도 호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

ordinances and other general regulations. Some foreign country legislated the topsoil conservation act, but not to domestic.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legislature and court as reference materials, and to the public and public officer as a means of an understanding of ecological restoration materials.

Key Words : *Legislation, Leading cases, legal class, planting material.*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비교적 타 건설분야에 비해 다루는 범위가 다양한 환경적 생태복원분야 중에서 재료분야는 실질적인 생태복원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그 법제도적 근거는 생태복원업역의 최종적인 구체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생태복원계획·설계 단계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 및 규제책에 비해 비교적 그 중요도가 미미했던 생태복원재료 분야와 관련된 법규는 최근 국토환경 및 경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련 산학연 단체의 꾸준한 관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분야 여러 항목들 중의 일부분으로서 ‘생태복원재료’와 관련된 국내·외 실정법 현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연구(신익순, 1997)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이와 유사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정주 및 휴식 공간의 쾌적성 추구가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바, 해당 공간의 구체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태복원재료와 관련된 법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연과학분야의 일종인 생태복원이란 학문의 연구대상인 생태복원재료 분야를 정신적 합리성(legal mind)을 강조하는 사회과학분야인 법률분야와 접목하여 연구함으로써 두 이질적인 분야의 괴리감을 완화하고, 생태복원업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시공의 핵심사항인 재료에 대한 제반 통제 규정을 법률

적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업무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태복원재료 관련 현행 국내 실정법과 판례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 속성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설정된 생태복원재료의 각 항목별로, 관련된 대한민국 현행 실정법과 판례 및 외국 법규를 연구 객체로 하여 국내 실정법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법규로는 국회법인 법률, 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 등 3종류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하위 법규정인 조례, 고시, 훈령, 기준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판단인 판례(leading case)를 본 연구의 대상 판례로 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생태복원재료 항목 설정

생태복원재료 항목과 항목별 세부용어를 설정하기 위하여 학술서적 ‘녹을 창조하는 식재기반’(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편역), ‘해안간척지 친환경적 복원·시공’(도서출판 조경)과 ‘조경공사표준시방서’(한국조경학회)상의 생태복원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을 발췌하였다.

그 결과 토양재, 식물재, 목재, 석재, 시멘트·콘크리트재 등 총 5개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용어도 결정하였다(표 1).

표 1. 생태복원재료 항목 설정 근거

생태복원재료 항목	항목별 세부용어	출처 근거		
		I	II	III
토양재	표토, 토사, 흙, 마사토, 경량토, 생명토	○	○	-
식물재	수목, 교목, 관목, 초화	○	○	○
목재	원목, 통나무, 죽재, 판재, 각재, 합판	○	-	○
석재	암석, 가공석, 자연석, 조경석, 경관석	○	○	○
시멘트·콘크리트재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골재, 인조목, 인조암(석)	○	○	○

I: 녹을 창조하는 식재기반(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편역)

II: 해안간척지 친환경적 복원·시공(도서출판 조경)

III: 조경공사표준시방서(한국조경학회)

2) 법규 및 판례 조사방법

표 1상에 나타난 ‘항목별 세부용어’를 2003년 12월을 시간적 기준으로 하여 인터넷상의 대한민국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종합법령정보 법령찾기’에 주제어(keyword)로 입력하여 관련 법규와 판례를 조사하였다.

3) 속성분석 방법

국내 생태복원재료의 항목별 관련 법규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서 법률적 위상과 생태복원재료 항목, 생태복원 영역별 현황, 법규와 판례의 상관성, 외국법규와의 비교 등을 채택하였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법규만 채택하였다.

첫째, 생태복원재료 항목 설정시 근거기준으로 삼은 학술서적 녹을 창조하는 식재기반, 해안간척지 친환경적 복원·시공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법규

둘째, 인문·사회 및 기타 산업분야 등 타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포함하는 조문을 가지는 법규는 제외

셋째, 생태복원분야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생태복원재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순수 생태복원재료 용어를 법조문에 포함시키고 있는 법규

III. 국내 관련 법규 및 판례 현황

1. 법규 현황

1) 관련 법규 검색 기준

항목별 세부용어(표 1)를 전술한 현행법령 검색 인터넷 프로그램에 주제로 입력할 경우 그 단어를 법조문 속에 포함하는 해당 법규명과 조문들이 검색된다. 해당 법규는 없는 경우와 한개 내지는 수십 개의 해당 법규가 나오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검색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창에 나타나는 다수의 법규중 다음과

2) 법규현황표의 분류기준

관련 법규현황표는 법규명과 내용요약 및 생태복원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표 2). 생태복원영역의 분류는 크게 생태복원재료의 특성과 생태복원업무분야로 대별하였으며, 전자는 생태복원재료에 대한 정의와 연구행위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후자는 다시 계약, 계획·설계, 시공, 관리, 행정 및 금융·재정 등으로 세분하였다. 행정분야는 생태복원재료와 관련된 업무, 절차, 인허가 및 권리 등에 관한 분야이다.

표 2. 국내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 현황

생태복원 재료 항목	세부용어	관 련 법 규		생태복원 영역	
		법 규 명	내용 요약(조)		
토양재 [7] *	표토 [5]	광산보안법시행규칙	· 노천채굴장에서의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 붕괴위험성 있는 표토 제거(88) · 표토붕괴 위험시 작업중지(90)	시공	
		사방사업법시행령	형질변경복구를 위한 표토정지(6)	시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채석작업계획 : 표토처리방법 포함(426)	계획·설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장 업무분장 : 표토활용대책 수립(6,10)	행정	
		환경정책기본법	표토의 유실 : 환경훼손에 해당(3)	특성	
	토사 [1]	산지관리법	국유림 산지안의 토사매각 : 수의계약가능(35)	계약	
	흙 [1]	식물방역법시행규칙	흙의 범위 : 암석이 풍화·분해되고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9의2)	특성	
마사토, 경량토, 생명토 [0]	-	-	-		
식물재 [39]	수목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 수목식재 일정 면적 확보(4의2)	계획·설계	
		공공차관의 도입및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재 : 수목 포함(2)	특성	
		공영주택건설기준령	대지조성시 기준 수목 : 환경조성에 이용(4)	계획·설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이식불가능 수목의 별채비용 : 수목소유자 부담(37) · 수목의 수량산정 방법(40)	금융·제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갱구부근 방화지대 : 수목 제거(191)	계획·설계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수목기증자 표시(16)	관리	
		국유재산법	시행령	사용·수익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 수목이식 경비 포함(30)	금융·제정
			시행규칙	수목이식행위 : 국유재산대장 갱정불필요(48)	행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 기준 : 수목 상태 포함(58) · 개발행위허가 제한 : 수목 집단생육지(63)	행정	
		농산종묘법	시행령	보증종묘 : 과수·화훼 수목 포함(1)	특성
			시행규칙	· 수목 보증종묘 생산계획서등의 작성 보존년도 : 3년(2) · 수목 : 보증표찰 첨부 필요(6) · 수목 : 포장검사 방법(9)	행정
		농약관리법	법	수목 : 병충해 방제용농약 사용의 대상물(2)	관리
			시행령	수목 : 적용병해충 범위에 관한 시험요청 가능(8)	관리
		농지법시행령	조경·관상용 수목 : 다년생식물재배지인 농지에 해당(2)	특성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다년생수목의 재식·이식 행위 : 허가필요(6)	행정	
		도로표지규칙	수목식재 : 도로표지 기능저해 금지(13)	계획·설계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공원시설 미설치 도시공원 부지 : 수목 녹화 의무화(6) · 녹지설치 기준 : 수목 식재(9)	계획·설계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 사무국 관리과장 업무분장 : 수목관리 포함(14)	행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수목의 일반적 보호관리 권한의 위임(43)	행정
			시행규칙	수목 식재·제거 : 국가지정문화재안에서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18의2)	행정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시행령	궁·종묘관리소 : 수목의 효율적 보존·관리(32)	행정
			시행규칙	수목의 보호·관리 업무분장 명시(2,7,9,12)	행정
		민법	· 수목가지제거권(240) · 지상권 관련 수목 사항(283,285,288,643) · 임대청구권 관련 수목 사항(644) · 수목 식재·보존시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758)	행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수목 관리업무 관장(58)	행정			
산림법	· 수목 : 임산물에 해당(2) · 수목 : 수형목 지정·해제(49,51) · 수목병충해 구제·방제(103) · 수목의 보존·관리계획 수립/시행(103의2)	특성/계획 · 설계/관리/ 행정			

<표 2. 계속>

생태복원 재료 항목	세부용어	관 련 법 규		생태복원 영 역	
		법 규 명	내용 요약(조)		
식물재	수목	산림조합법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경제사업에 해당(108)	행정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산림청 국유림관리국장 :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사 및 방지 업무 분장(10)	행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사업주 : 수목 취급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 의무(196)	관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수목원 조성 목적 :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1) ·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의 정의및수목원사업(2,3) · 수목유전자원의 교류(14~16)	특성	
		수질환경보전법	팔공장 수목에 대한 농약사용 제한 및 사용시 과태료 부과(46의2,60)	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수목의 제거 및 변경(6)	계획·설계	
		외국인투자촉진법	수목 : 외국인 출자목적물의 일종인 자본재에 해당(2)	특성	
		입목등기처리규칙	입목표시등기 : 수목 위치 기재	행정	
		입목에관한 법률	법	· 입목에 대한 정의 : 등기된 수목집단(2) · 수목에 대한 저장권의 효력(담보, 경매등)(4) · 수목집단의 소유권 보존등기(8) · 수목 관련 이해관계자의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청구(10) · 수목 등기신청서 : 위치, 수종, 수량, 수령 기재(15) · 토지부착 수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18,19)	속성/행정
				시행령	· 수목집단의 범위(1) · 입목 등록시의 수목조사(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의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수목 별채행위 제한(27,28)	행정
			지방재정법시행령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보상 : 수목이식 경비 포함(104)	금융·재정
			종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발시험장등의 주위 수목의 별채 유지(8)	관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후의 일정기간 동안 토지이용제한 : 수목식재(50)	행정
		하천법시행령	다년생 수목 : 하천산출물에 해당(25)	특성	
		화물유통촉진법	화물터미널사업자 : 해당 토지내 수목의 변경 제거 가능(28의4)	행정	
	교목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조경용 교목의 가로수 식수 및 관리(7)	관리	
	관목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녹지설치 기준 : 교목 식재(9) → 수목(세부용어)과 중복	계획·설계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녹지설치 기준 : 관목 식재(9) → 수목(세부용어)과 중복	계획·설계		
	초지법시행규칙	초지의 성실관리의무 : 관목의 제거(13의2)	관리		
초화	[0]	-	-		
목재	죽재,목재, 원목,합판	산림법	법	죽재(원목 포함) : 임산물에 해당(2)	특성
			시행령	목재 가공을 위한 원목 :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에 해당(71)	특성
		소방법시행령	목재,합판 : 실내장식물에 해당(2)	특성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목재 적재행위 : 허가 사항(12의2)	행정	
	통나무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통나무비계 조립시 구조적 준수사항(376)	시공
	판재	[0]	-	-	

<표 2. 계속>

생태복원 재료 항목	세부용어	관 련 법 규		생태복원 영 역		
		법 규 명	내용 요약(조)			
석재 [11]	석재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공사표지판 설치재료 : 석재 사용(32)	시공	
		영업세법시행령		석공사 : 건설업에 해당(7)	금융·재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대한광업진흥공사 : 석재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사업 수행(10)	행정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 업무분장 : 석재 조사 및 개발 사항 담당(6,12)	행정	
		산지관리법		· 석재 정의 : 산지안의 조경용 사용목적의 암석 포함(2) · 국유림 산지안의 석재 매각 : 수의계약 가능(35)	특성/계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석재사업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해당	금융·재정	
	암석 [2]	골재채취법		· 주택단지안 보도 : 석재 포장(6) · 주택단지 비탈면상 석재 사용 배수로 설치 : 토양유실 에 따 른 수해방지 조치(7)	시공	
		농지법시행령		농지의 암석 채굴 행위 : 농지개량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에 해 당(3의2)	행정	
	자연석 [2]	산지관리법	법	산지안에서의 자연석 채취금지(28)	행정	
			시행령	자연석의 규모(정의)(38)	특성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 준등에관한규칙		자연석 : 내수재료로 사용(2)	특성		
	가공석,조경석, 경관석 [0]	-		-	-	
	시멘트·콘크 리트재 [4]	시멘트(모르타 르),콘크리트 [2]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 준등에관한규칙		· 시멘트모르타르 : 불연재료로 사용(6) · 콘크리트 : 내수·불연재료로 사용(2,6)	특성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멘트 제조·가공업 및 운송업 :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38)	행정
골재 [1]		골재채취법		독립법 : 골재채취 관련 기본사항 규정	행정	
인조암(석) [1]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 준등에관한규칙		인조석 : 내수재료에 해당(2)	특성	
인조목 [0]		-		-	-	

* : 【 】 안의 숫자는 법규수

2. 판례 현황

생태복원재료와 관련된 업무상 분쟁의 발단은 법규상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의 위반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조문 해석상의 상반된 주장이나 법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문제점으로부터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판시한 판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 실정법에 나타난 생태복원재료 항목별 판례 현황으로서는 식물재 중 수목이란 세부용

어를 가진 판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석재를 제외한 토양재, 목재, 시멘트·콘크리트재 등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표 3).

IV. 생태복원재료 관련 국내 실정법의 속성 분석

1. 법률적 위상과 생태복원재료 항목 측면에서 본 관련 법규

국내의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의 법률적 위상은 국회법인 법률, 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

표 3. 국내 생태복원재료 관련 판례 현황

생태복원재료 항목	세부용어	관련 판례	
		판례명	내용 요약(괄호안의 수 : 판례형성 년도)
식물재 【15】*	수목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2001.7.27. 선고,99두9919],[대판,1999.9.3. 선고,97누2245]	골프장 수목구입비 :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2001),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1999)
		낙찰허가결정[대판,1998.10.28.자98마1817]	토지상의 수목가액 :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포함
		손해배상[대판,1996.1.23. 선고,95다38233],[대판,1993.7.27. 선고,93다20702],[대판,1991.7.23. 선고,89다카1275],[대판,1989.7.11. 선고,88다카9067],[대고법,1989.5.4. 선고,88나2862]	· 수목절단에 따른 임야훼손시 원상회복을 위한 해당 수목의 대체비용 : 통상손해로 인정(1996) · 장마철 가로수 전도사고 :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 책임 인정(1993) · 가해자의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수목고사사실 인정(1991) · 토지소유자의 승락 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식재한 수목 :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수목소유권 주장 불가(1989,대판) · 토지소유자에 의한 인접지역 수목 조망권 차단 행위 : 단지 반사적 이익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아님(1989,대고법)
		공사금[대판,1995.8.11. 선고,94다26745,26752]	수종이나 수령 등에 관한 구체적 정함이 없더라도 조경식재공사는 도급공사에 해당함.
		부당이득금[대판,1993.6.25. 선고,92다55558]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수목을 식재·관리해오고 있는 도로법면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 인정
		토지수용제결처분취소[대판,1991.1.29. 선고,90누3775],[대판,1990.2.23. 선고,89누7146],[대판,1989.9.29. 선고,89누2776,2783,2790]	· 수목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시 필히 이전가능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1991). · 수용토지상의 수목 보상액 산정의 불법 인정(1990, 1989)
		동산인도[대판,1990.1.23. 자89다카21095]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 : 토지경락인의 수목까지의 경락취득 불가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대판,1986.11.18.자96마902]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집행)명의를 효력 : 지상에 식재된 수목에까지는 미치지 못함(별도의 철거 채무명의를 필요)	
교목,관목,초화 【0】	-	-	
석재 【1】	자연석 【1】	자연석채취불허가[대판,1996.7.30. 선고,95누13760]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 채취로 인한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 : 자연석채취 불허가
토양재, 목재, 시멘트·콘크리트재 【0】			

* : 【 】 안의 숫자는 판례수

령·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구분하여 생태복원재료 항목별로 그 속성을 분석하였다(표 4). 단, 일정 법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복수로 적용되는 항목은 상위법규 하나만 고려하지 않고 해당 위상란에 모두 포함시켰다.

1) 법률적 위상
생태복원재료 관련 총 74개의 법규중 시행규칙이 27개(36.5%)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시행령 24개(32.4%), 법률 23개(31.1%)가 비슷한 빈도를 보임으로써 하위

표 4.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의 법률적 위상 (단위, 수 : 개, A/B : %)

생태복원 재료항목	법률적 위상		명령				계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수	A/B*	수	A/B	수	A/B	수	A/B
토양재	2	8.7/28.6	2	8.3/28.6	3	11.1/42.8	7	9.5/100
식물재	15	65.2/33.3	13	54.2/28.9	17	63.0/37.8	45	60.8/100
목재	1	4.4/16.7	3	12.5/50	2	7.4/33.3	6	8.1/100
석재	4	17.3/33.3	5	20.8/41.7	3	11.1/25	12	16.2/100
시멘트·콘크리트재	1	4.4/25	1	4.2/25	2	7.4/50	4	5.4/100
계	23	100/31.1	24	100/32.4	27	100/36.5	74	100/100

*A : 항목별 빈도(세로 카운팅), B : 법규 위상별 빈도(가로 카운팅)

위상의 법규가 강한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가 법률적 위상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바뀔 때 따라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화, 상세화된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2) 생태복원재료 항목

생태복원재료 항목별로는 총 74개 법규중 식물재와 관련된 법규수가 45개(60.8%)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석재가 12개(16.2%), 토양재가 7개(9.5%), 목재가 6개(8.1%) 등의 빈도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 생태복원업종의 시공을 위한 실정법 규정에서 식물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녹화분야가 생태복원업종의 주종을 이룬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3) 법률적 위상별 생태복원재료 항목

각 법률적 위상면에서 생태복원재료 항목별 법규수 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총 23개의 법률중 식물재가 15개(65.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다음으로 석재 4개(17.3%), 토양재 2개(8.7%) 등의 순이고, 시행령에서는 총 24개의 시행령중 식물재가 13개(54.2%)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빈도를, 다음으로 석재 5개(20.8%), 목재 3

개(12.5%) 등의 순이며, 시행규칙에서는 총 27개의 시행규칙중 식물재가 17개(63.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다음으로 토양재·석재 각각 3개(8.1%) 등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역시 식물재와 관련된 법규수의 빈도가 타 항목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태복원업역중 엔지니어분야와 시공분야를 막론하고 현행 실정법에서 생태복원재료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hardscape용 재료인 시설물 재료보다 softscape용 재료인 식물재(수목등)에 관한 규정이 보다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태복원 영역별 현황 분석

국내의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의 생태복원 영역별 현황은 재료의 특성과 계약, 계획·설계, 시공, 관리, 행정 및 금융·재정 등으로 구성되는 생태복원 업무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표 5), 이러한 업무분야들은 동시에 생태복원재료 분야에서 법규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일정 법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표 2상의 생태복원 영역 부분의 일부 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역별 분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법규수로 간주하였다.

영역별 생태복원재료 관련 총 77개의 법규중 행정분야가 28개(36.3%)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재료의 특성 18개(23.4%),

표 5.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의 생태복원 영역별 현황 (단위, 수 : 개, A/B : %)

생태복원 영역	재료의 특 성		생태복원 업무 분야												계	
			계 약		계 획·설 계		시 공		관 리		행 정		금 융·재 정			
	수	A/B*	수	A/B	수	A/B	수	A/B	수	A/B	수	A/B	수	A/B	수	A/B
토양재	2	11.1/28.6	1	25/14.3	1	10/14.3	2	40/28.5	0	0/0	1	3.6/14.3	0	0/0	7	9.1/100
식물재	9	50/18.7	0	0/0	9	90/18.7	0	0/0	9	100/18.7	18	64.3/37.5	3	60/6.4	48	62.3/100
목 재	2	11.1/33.3	0	0/0	0	0/0	1	20/16.7	0	0/0	3	10.7/50	0	0/0	6	7.8/100
석 재	3	16.7/25	1	25/8.3	0	0/0	2	40/16.7	0	0/0	4	14.3/33.3	2	40/16.7	12	15.6/100
시멘트· 콘크리트재	2	11.1/50	0	0/0	0	0/0	0	0/0	0	0/0	2	7.1/50	0	0/0	4	5.2/100
계	18	100/23.4	2	100/2.6	10	100/13.0	5	100/6.5	9	100/11.7	28	100/36.3	5	100/6.5	77	100/100

*A : 항목별 빈도(세로 카운팅), B : 생태복원 영역별 빈도(가로 카운팅)

계획·설계 10개(13.0%), 관리 9개(11.7%)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가 생태복원 업무, 절차, 인허가 및 권리 등을 규제하는 행정분야에 절대적으로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각종 생태복원재료의 정의 및 연구행위등을 밝히고 있는 재료의 특성분야와 관련된 법규수도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법규 제·개정시에는 생태복원 업무의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계획·설계와 시공 및 관리와 같은 전문분야에 다수의 법조문이 삽입될 것이 요구되어진다.

각 생태복원영역 분야에서의 생태복원재료 항목별 법규수 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재료의 특성 분야에서는 총 18개의 법규중 식물재가 9개(50%)로 과반수의 높은 빈도를, 다음으로 석재 3개(16.7%), 토양재·목재·시멘트/콘크리트재 각각 2개(11.1%) 등의 순이고, 계약분야에서는 총 2개의 법규중 토양재와 석재가 각각 1개(50%)씩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설계분야에서는 총 10개의 법규중 식물재가 9개(90%)로 가장 높은 빈도로 대부분을, 다음으로 토양재가 1개(10%)이고, 시공분야에서는 총 5개의 법규중 토양재·석재가 각각 2개(40%), 목재가 1개(12.5%)이며, 관리분야에서는 총 9개의 법규가 모두 식물재에 해당한다. 행정분야에서는 총 28개의 법규중 식물재가 18개(64.3%)로 과반수 이

상의 높은 빈도를, 다음으로 석재 4개(14.3%), 목재 3개(10.7%) 등의 빈도순을 보이고, 금융·재정분야에서는 총 5개의 법규중 식물재가 3개(60%), 석재 2개(40%) 등의 빈도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식물재와 관련된 법규가 전혀 없는 계약과 시공 분야를 제외한 전 생태복원 영역에서 식물재에 관한 현행법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생태복원 관리분야와 관련된 총 9개의 현행법규는 유일하게 식물재와 관련된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향후 법규 제·개정시에는 식물재에 대한 관심 외에도 토양재를 비롯한 타 재료항목에 대한 관리규정도 포함시켜야겠다.

3. 법규와 판례의 상관성 분석

생태복원재료의 항목별 관련 법규와 판례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관련 업무상 판례가 형성될 만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항목이 실제 법규상의 항목과 빈도수에서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2상에 나타난 국내 생태복원재료의 항목별 관련 전체 법규수는 66개이나 이중 일부 항목에서 중복된 법규가 10개 존재하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한 독립 법규수는 56개에 해당한다. 단, 일정 법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복수로 적용되는 항목은 상위법규 하나만

고려하여 법규수에 포함시켰다. 전체 66개 법규중 식물재와 관련된 법규가 39개로서 절대적으로 높은 빈도(59.1%)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석재(11개, 16.7%), 토양재(7개, 10.6%), 목재(5개, 7.6%), 시멘트·콘크리트재(4개, 6.0%) 등의 빈도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항목별 관련 판례수는 총 16개로서 식물재와 관련된 판례(15개, 93.8%)가 대부분이고 그 외 석재 관련 판례가 1개 있을 뿐 나머지 항목과 관련된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표 6).

따라서 법규와 판례에서 공통으로 식물재와 관련된 법규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법규상에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생태복원재료 항목이 역시 많은 판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식물재가 차지하는 빈도(93.8%)가 법규에서 식물재가 차지하는 빈도(59.1%) 보다 약 1.5배에 달하고 있다. 식물재를 제외한 기타 항목의 경우, 법규에서는 석재, 토양재, 목재, 시멘트·콘크리트재의 항목들이 비교적 고르고 낮은 빈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석재(빈도 6.2%)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과 관련된 판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태복원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에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에 식물재와 관련된 규정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후의 분쟁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도 식물재와 관련된 판례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규제있는 곳에 다툼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표 6. 국내 생태복원재료의 항목별 관련 법규수 및 판례수

생태복원 재료 항목	법 규		판 례	
	수(개)	빈도(%)	수(개)	빈도(%)
토양재	7	10.6	0	0
식물재	39	59.1	15	93.8
목 재	5	7.6	0	0
석 재	11	16.7	1	6.2
시멘트· 콘크리트재	4	6.0	0	0
계	66(10*)	100	16	100

* : 항목별 중복법규수 → 순수 독립법규수 : 56개

4. 외국 법규와의 비교 분석

생태복원재료와 관련된 외국 법규에 관한 본 연구에서의 검토는 자료수집의 한계상 토양재와 식물재로 한정하였다. 토양재로서 토양보전, 표토(top soil) 활용 항목과 식물재로서의 수목 항목 등이 법률(act), 조례 및 기타 일반규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표 7). 국내의 관련 법규가 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실정법 위상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외국 법규는 일반적으로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 및 기타 일반규정의 형태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사업시행전 표토보존의 의무화가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 법규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업시행후 표토정지(사방사업법시행령)와 표토처리방법(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입목의 정의를 밝히고 있는 법규로는 국내와 일본에서 동일한 법규명인 ‘입목에관한법률’이 존재한다.

V. 결 론

생태복원재료 관련 국내 실정법의 속성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들의 법률적 위상은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의 빈도가 각각 36.5%, 32.4%, 31.1%의 순으로서 하위 위상의 법규가 다소 강한 빈도를 보였으며, 생태복원재료 항목별로는 식물재와 관련된 법규수가 전체항목 법규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석재, 토양재, 목재 등의 빈도순을 보이고 있다.

2.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들을 영역별로 분석하면 행정분야가 전체 대비 36.3%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다음으로 재료의 특성(23.4%), 계획·설계(13.0%)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계획·설계와 시공 및 관리와 같은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다수의 법조문이 필요하다.

3. 생태복원재료 항목별 관련 판례수는 식물재와 관련된 판례(전체 대비 빈도 : 93.8%)가 대부분이고, 법규와 판례에서 공통으로 식물재

표 7. 생태복원재료중 토양재·식물재 관련 외국 법제도

생태복원 재료 항목	내 용	법 규 명	국가	법규의 위상		
				I	II	III
토양보전	정부에 의한 토양침식 방지 프로그램	Agricultural Act(농업법, 1985)	미국	○	-	-
토 양 재 (top soil) 활 용	건축물의 건설시 표토(top soil) 보존의 의무화	연방건설법(제39조)	독일	○	-	-
	판매를 위한 농업용 표토(top soil) 제거시 정부승인 필요	Agricultural Land(Removal of Surface Soil) Act(농지법, 1953)	영국	○	-	-
	표토(top soil)의 정의, 표토조사/기록, 표토평설, 저장표토의 사용, 표토의 정지작업 등 규정	조경공사BS일반규정 (British Standard) 4428(sec.1,2,4)	영국	-	-	○
	화단(planter) 토양표면(top soil) 살포, 피복 규정	노외주차장시설(off-street parking facilities)의설계기준조례(Land use ordinance No.348, California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1989)	미국	-	○	-
	표토(top soil) 제거시 타운십 당국의 허가 필요	표토제거조례(Top soil removal by-law, 온타리오주 유포피아시 에사(Essa) 타운십, 1998-28)	캐나다	-	○	-
	개발구역에서의 표토보존 설계의 의무화/표토보존을 위한 기술적 세목의 법제화	都市計劃法(1991, 제33조 제1항 제9호), 同法施行令(제28조의2 제2호)	日本	○	-	-
	개발행위에 따른 지역삼림계획시 표토보전에 필요한 시설 결정의 의무화	開發行爲許可基準の運營通達(1978, 第二(1))	日本	○	-	○
식물재(수목)	입목의 정의	立木에관한法律(1909, 제1조 제1항)	日本	○	-	-

I: 법률(act), II: 조례, III: 기타 일반규정

와 관련된 법규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법적 규제 대비 법정다툼의 빈도가 비례하였다.

4. 국내의 관련법규가 주로 실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상인데 반해 외국의 경우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 및 기타 일반규정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표토보존 의무화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국내 법규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최근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생태복원 분야에서의 각종 재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생태복원업역의 설계/시공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생태복원 재료 관련 국내 실정법과 판례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그 속성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해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향후 법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기여하리라고 예상되며, 관련 법규를 제정 보완해나가는 법제정 주체기관과 판례를 형성해나가는 사법기관에게도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시민들에게는 생태복원업역의 객체인 생태복원재료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고, 생태복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본 연구결과를 인식시켜 생태복원업역 확대를 유도시킬 수 있는 도구역할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생태복원재료 관련 법규정의 현황과 속성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이므로 향후 이들 규정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토양재와 식물재에 한정된 외국법규는 국내 법규정의 관련 항목들에 대응하는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여 생태복원재료 전체 항목에 대한 국내법규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인 용 문 헌

- 권오준 · 이명우 · 임봉구. 1996. 환경설계관계법규. 고양 : 동별당.
- 법제처 편찬. 2002. 대한민국헌행법령집(전50권).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신익순. 1997. 국내 · 외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희영 · 최병권. 2001. 해안간척지 친환경적 복원 · 시공. 서울 : 도서출판 조경.
- 한국조경학회. 2003. 조경공사표준시방서. 서울 : 문운당.
-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편역. 2003. 녹을 창조하는 식재기반. 서울 : 보문당.
- Buck Abbey. 1998. U.S. Landscape ordinanc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J. D. C. Harte. 1985. Landscape, land use and the law. London : E. & F.N. Spon Ltd..
- Richard C. Sardon and James P. Karp. 1993. The Legal Landscap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http://www.moleg.go.kr>
- <http://www.scourt.go.kr>

接受 2004年 1月 2日